

노스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안전부실업보험



999999

주정부 직원 OP 3- 고용주에게 알림

SUSAN DOE 888 NORTH 10TH STREET SILER CITY, NC 27344 우편 날짜: 9월 99일, 9999년

답: 원고 Id: XXXXXXX

\$000.00 의 실업 보험 초과 지급

친애하는 선생님,

N. C. Gen. Stat. § 143-553

은노스캐롤라이나주에돈을갚아야하는고용기구에고용되었고월급전부또는일부를주정부기금으로받는모든사람은지속적고용상태로빚진금액을완전히배상해야한다고규정합니다.이법령은또한고용주가근로자에게배상의무를서면으로통보하도록요구합니다.적당한시간후에직원이의무를전액지불하거나만족스러운상환을시작하지않은경우고용주는직원이행정또는사법구제를추구하지않는한고용종료절차를밟아야합니다.

우리기관은귀하의직원으로부터참조된초과지급금을징수하려는여러시도를했습니다.우리는초 과초과지급금을징수하거나기준지급협상을할수없었습니다.위에언급된일반규정에따라, N.C. Gen. Stat. § 143-

553(b)에의거하여귀하의직원에게전액보상의무를서면으로알림으로써이징수노력을돕기를요청합니다.귀하의직원에게 919.707.1338 로복구전문가에게전화하도록지시하십시오.

9월 1일, 2018 년까지만족할만한조치가취해지지않았다면,우리는 N.C. Gen.Stat.§143-553(b)

에따라직원을해고할것을요청할수밖에없습니다.

도움을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

혜택무결성섹션

NC BI 35